# 2.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방법

①




1. 상단 또는 중간에 확인서 발급 "클릭"
2. 로그인 창에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로그인

②




1. 신청유형-법인번호/사업자등록번호/사업장관리번호/사업장개시번호
2. 요청기간 각 연도별 6월, 12월기준으로 발급가능하며 과거 3년간까지 가능
   (2006년 1월 1일 이전 자료는 신청불가)

③




1. 신청 후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틀린 부분은 수정하고 없으면 신청버튼 "클릭"

④




1. 출력가능시간은 출력 여부와 횟수 상관없이 신청 완료 시점에서 30분이며, 초과된 건에서는 자동으로 발급완료 처리 "발급받기 클릭"
2. 자료없음으로 뜨는 경우 발급이 불가하므로 다시 확인 바람

⑤



원본문서번호:

## 산업재해율 확인서

◆ 사업자현황

| 사업자명 | | 대표자명 | |
|---|---|---|---|
| 사업자번호 | | 산재 적용업종 (중업종) | 건설업 등 업종 |
| 소재지 | | | |
| 용도 | 서류 | | |

※ 본 내용은 "사업자등록번호" 기준의 조회자료로 법인번호, 사업장관리번호로 조회한 정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※ 본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건설공사 입찰시 사용하는 환산재해율 및 종합심사낙찰제(재해율 및 사망만인율)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◆ 결과

| 해당기간 | 산업재해율(%)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| 해당기업체 | 동종업종평균 | |
| 2018년01월~2020년12월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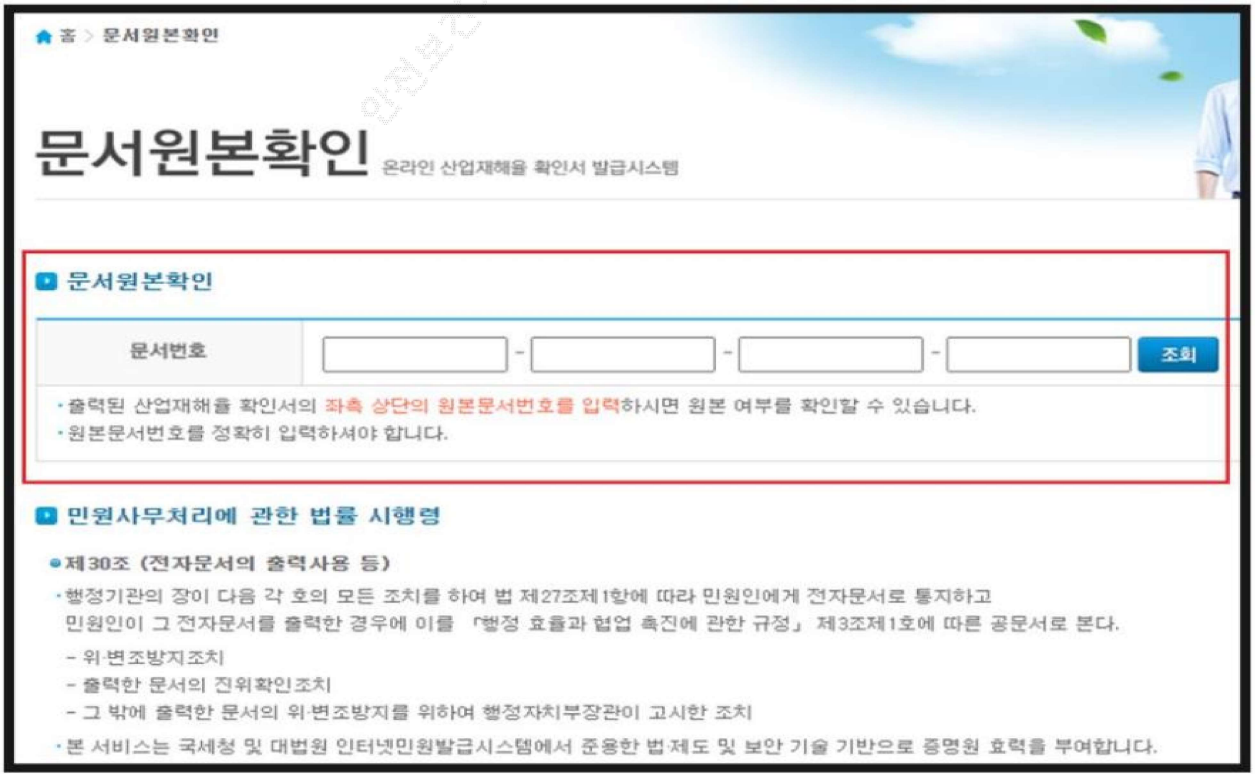
신청인 : [전자서명]

상기 사실을 확인함
2021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이 사 장

1. 산업재해율 확인서 예시,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

⑥



홈 > 문서원본확인

# 문서원본확인

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

■ 문서원본확인

문서번호 - - - 조회

·출력된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좌측 상단의 원본문서번호를 입력하시면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·원본문서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.

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● 제30조 (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)

·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 이를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.

- 위·변조방지조치
-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
-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·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

·본 서비스는 국세청 및 대법원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에서 준용한 법·제도 및 보안 기술 기반으로 증명원 효력을 부여합니다.

1. 산업재해율 확인서 상단에 원본확인번호가 있으므로 이곳에 입력하면 문서의 원본 확인이 가능

⑦

원본문서번호:8837

# 산업재해율 확인서

◆ 신청내용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사업자명 | 주식회사 | 대표자명 | |
| 사업자번호 | | 산재 적용업종 (종업종) | 건설업 등 2개 업종 |
| 소재지 | | | |
| 용도 | 확인용 | | |

※ 본 내용은 "사업자등록번호" 기준의 조회자료로 법인번호, 사업장관리번호로 조회한 정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건설공사 입찰시 사용하는 환산재해율 및 종합심사낙찰제(재해율 및 사망만인율)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◆ 조회결과

- 일반업종

| 산재보험적용업종 | 해당기간 | 산업재해율(%)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해당기업체 | 동종업종평균 | |
| 건설업 등 2개 업종 | 2018년07월~2020년06월 | 0.00 | 1.95 | |

위와 같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09

신청인 : |전자서명|

상기 사실을 확인함

2020.09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

산업재해정보 _ 발행 2021-12-29 0:20





**1.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종 원본**